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재 생 에 너 지 개 발 · 이 용 · 보 급
촉 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약시장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일몰하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943호, 2026. 9. 15.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기존 RPS제도 일몰을 위한 공급의무화제도 변경,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의무자의 범위, 설비 보급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 의무자의 지정 기준,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 임기, 해촉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신설, 안 제9조)

위촉 위원 임기(2년) 및 연임(최대 2회)을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해촉사유에 추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명시함.

나. 기존 공급의무화(RPS)제도 일몰에 따른 공급의무자 요건 및 의무공급량 변경 등(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공급의무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력거래를 최초로 개시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자로 한정하며, 의무공급량의 합계를 2026년 의무공급량 합계로 고정하되, 매매계약 만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공급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의무공급량 이행 연기의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함.

다. 재생에너지 구매의무자의 범위 및 비용회수 규정(안 제18조의19 신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계약시장제도 하의 구매의무자로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낙찰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가격과 전력시장 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매월 정산하도록 함.

라.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 지정(안 제18조의20 및 제18조의22 신설)

발전설비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목표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한 연도별 보급목표 설정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하며, 공공기관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발전설비 50만킬로와트 이상 보유자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0만킬로와트 이상 보유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함.

마. 목표관리대상자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공표 절차, 보급의무 유예 및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산정·감경 기준 마련(안 제18조의21 및 제18조의23부터 제18조의26까지 신설)

목표관리대상자의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공표 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고, 보급의무자가 보급의무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3년간 그 이행을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여 대체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급의무 불이행분의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절차를 규정하며, 전력계통 접속 지연이나 천재지변 등 보급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징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업무·지정취소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신청(안 제18조의27부터 제18조의30까지 신설)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계약시장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며,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시장관리기관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00.)
3) 행정규제 : 0000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심의회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 중 “제4조의2”를 “제4조의2, 제4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최초로 개시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는 제외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자”로 한다.

제18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1. 해산·파산 또는 발전사업의 전부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정할 의무공급량이 없게 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된 자가 체결한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 매매계약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공급의무자가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할 공급의무자의 선정 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제1항 중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한 2026년 의무공급량의 합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의무공급량의 연도별 합계를 줄여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삭제하

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2.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폐지, 운영 중단 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 따른 전기공급으로의 전환
3. 법 제12조의5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기간의 도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4제5항 전단 중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제18조의11 중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급의무의 이행
2. 제18조의4에 따른 의무공급량을 초과하여 구매하고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인증서의 구매

제18조의19부터 제18조의3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9(재생에너지 구매의무자 및 비용회수 등) ① 법 제12조의14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3. 「전기사업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시장제도에 따라 낙찰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가격(계약시장제도에 따른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확정되어 해당 계약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과 전력시장에서 형성된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해당 설비의 사업자와 매월 정산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산 비용을 법 제12조의14제6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매월 구매의무자별 전기판매량(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기사용량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자신을 제외한 구매의무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구매의무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배분 및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구매의무자

2. 법 제12조의19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

3.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배분 및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0(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대상자 등) ① 법 제12조의15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란 발전설비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표관리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자는 목표관리대상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8조의22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및 지정 해제의 절차, 그 밖에 목표관리대상자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1(개선명령 불이행 사실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가 법 제12조의1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1. 목표관리대상자의 명칭

2. 개선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3. 보급목표 대비 이행실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이 된 사실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공표기간은 공표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

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사실의 확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2(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보유한 발전설비(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의 총 설비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자

2. 보유한 발전설비(재생에너지 설비만 해당한다)의 총 설비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보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12조의16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급의무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보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보급의무자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3(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등의 유예 및 보급대체이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등이 보급의무등에 미달한 경우에는 보급의무자등의 신청에 따라 미달분 중 해당 연도 보급의무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행을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급의무자등은 유예된 보급의무등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매년 유예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유예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보급의무등보다 우선하여 이행해야 한다.

② 보급의무자등은 다음 각 호의 미달분에 대하여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한 때에는 법 제12조의17제2항에 따라 납부의 대상이 된 미달분에 해당하는 보급의무등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보급의무등의 미달분 중 제1항에 따라 유예되지 아니한 부분
2. 제1항에 따라 유예된 보급의무등 중 유예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

③ 제2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여 이행한 것으로 보는 보급의무등은 해당 미달분이 속한 연도의 보급의무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 절차, 보급 대체이행금의 납부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4(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18제2항에서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급의무 불이행분의 규모
2. 보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3. 보급의무 불이행의 사유 및 보급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보급의무자의 보급의무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미달분(제18조의23제1항에 따라 유예된 부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점검 방법, 과징금 산정 기준 등 그 밖에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보급의무 불이행분, 과징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명시한 서면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6(과징금의 감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8제4항에 따라 보금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전력계통 접속의 지연 등 보급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전설비의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없거나 그 공사가 지연된 경우

2. 그 밖에 보급의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보급의무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소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18조의27(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1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에너지 또는 전력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계약시장제도의 운영과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물적 능력을 갖출 것

3.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제18조의28(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12조의19제2항에서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계약시장제도의 운영 및 이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 관리
2. 보급의무 및 목표관리 이행실적의 관리
3. 법 제12조의14제7항에 따른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관리 및 운영
4. 법 제12조의20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5. 제18조의19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업무의 대행(차액정산금의 산정·통지·청구·지급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의29(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2조의19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8에 따른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30(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0제2항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시장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시장관리기관에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시장관리기관이 그 신청기간 내에 해당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급량을 확인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급의무등의 유예 범위 및 보급대체이행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은 제18조의2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100분의 2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의 구성) ①~② (생략) <u><신 설></u>	제4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u> 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u>위원</u> 의 임기 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 로 한다.
제4조의2(심의회 <u>위원</u> 의 해촉 등)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원을 지명한 자는 <u>위원</u>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4. <u>위원</u>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 히는 경우 <u><신 설></u>	제4조의2(심의회 <u>위원</u> 의 해촉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아니한 경우 5. <u>위원</u>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 히는 경우 <u>제4조의3(심의회 <u>위원</u>의 제척·기 피·회피 등)</u> ① 심의회 <u>위원</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제9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3(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생략)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3(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2026년 12월 31일 당시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최초로 개시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2. ~ 4.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1. 해산·파산 또는 발전사업의 전부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정할 의무공급량이 없게 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된 자가 체결한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 매매계약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공급의무자가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이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
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
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
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
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
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다.

경우 인수할 공급의무자의 선정
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
별 합계는 이 영 시행 전 종전
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부 장관이 공고한 2026년 의무공
급량의 합계 이상으로 한다. 다
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가 줄어든
경우에는 의무공급량의 연도별
합계를 줄여서 정할 수 있다.

1.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2.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재생
에너지 설비의 폐지, 운영 중단
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의

5에 따른 전기공급으로의 전환

3. 법 제12조의5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총전력생산량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재생에너지 발전량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전기
 사업법」 제2조제16호나목 중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에서 생산
 된 발전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
 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
 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
 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재생에
 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
 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
 공급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급인증서 기간의 도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사유

<삭 제>

<삭 제>

<삭 제>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을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연기된 의무공급량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그 연기된 의무공급량 중 매년 100분의 20 이상을 연도별 공급의무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

<삭 제>

⑤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연기된 의무공급량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그 연기된 의무공급량 중 매년 100분의 20 이상을 연도별 공급의무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

장을 통하여 보전(補填)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을 통하여 보전(補填)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u>1. 공급의무의 이행</u> <u>2. 제18조의4에 따른 의무공급량을 초과하여 구매하고 의무이행 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인증서의 구매</u>
<u><신 설></u>	<u>제18조의19(재생에너지 구매의무자 및 비용회수 등) ① 법 제12조의14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u>1. 「전기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u> <u>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u> <u>3. 「전기사업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u>

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판매 사업자는 계약시장제도에 따라 낙찰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가격(계약시장제도에 따른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확정되어 해당 계약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과 전력시장에서 형성된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해당 설비의 사업자와 매월 정산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판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산 비용을 법 제12조의14제6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매월 구매의무자별 전기판매량(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기사용량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자신을 제외한 구매의무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구매의무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판매

<신 설>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배분 및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구매의무자
2. 법 제12조의19에 따른 계약 시장관리기관
3.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배분 및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0(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대상자 등) ① 법 제12조의15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란 발전설비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표관리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자는 목표관리대상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

<신 설>

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8조의22제1항에 따라 보
급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
표관리대상자를 지정하거나 지
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지정 및 지정 해제의
절차, 그 밖에 목표관리대상자
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18조의21(개선명령 불이행 사실
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가 법 제
12조의15제3항에 따른 개선명
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1. 목표관리대상자의 명칭

2. 개선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

<신 설>

간

3. 보급목표 대비 이행실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이 된 사실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공표기간은 공표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사실의 확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2(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의무자) ① 법 제12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보유한 발전설비(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의 총 설비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자

2. 보유한 발전설비(재생에너지 설비만 해당한다)의 총 설비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보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신 설>

제12조의16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급의무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보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보급의무자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3(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등의 유예 및 보급대체이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등이 보급의무등에 미달한 경우에는 보급의무자등의 신청에 따라 미달분 중 해당 연도 보급의무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행을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급의무자

등은 유예된 보급의무등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매년 유예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유예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보급의무등보다 우선하여 이행해야 한다.

② 보급의무자등은 다음 각 호의 미달분에 대하여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한 때에는 법 제12조의17제2항에 따라 납부의 대상이 된 미달분에 해당하는 보급의무등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보급의무등의 미달분 중 제1항에 따라 유예되지 아니한 부분

2. 제1항에 따라 유예된 보급의무등 중 유예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

③ 제2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여 이행한 것으로 보는 보급의무등은 해당 미달분이 속한 연도의 보급의무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 절차

<신 설>

차, 보급대체이행금의 납부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4(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18제2항에서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급의무 불이행분의 규모
2. 보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3. 보급의무 불이행의 사유 및 보급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보급의무자의 보급의무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미달분(제18조의23제1항에 따라 유예된 부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른

<신 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 실적의 점검 방법, 과징금 산정 기준 등 그 밖에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5(과징금의 부과 및 납

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보급의무 불이행분, 과징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명시한 서면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8조의26(과징금의 감경)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
의18제4항에 따라 보급의무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급의무를 이
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
항력 또는 전력계통 접속의
지연 등 보급의무자의 귀책사
유가 아닌 사유로 발전설비의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없거나
그 공사가 지연된 경우

2. 그 밖에 보급의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보급의무를 이행하
지 못한 경우로서 보급의무자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
차에 따라 그 사실을 소명하
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신 설>

제18조의27(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19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

<신 설>

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에너지 또는 전력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계약시장제도의 운영과 발전
정보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물적
능력을 갖춘 것
3.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
급 및 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
이 있을 것

제18조의28(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12조의19제2항에서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계약시장제도의 운영 및 이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 관리
2. 보급의무 및 목표관리 이행
실적의 관리
3. 법 제12조의14제7항에 따른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
의 구축, 관리 및 운영
4. 법 제12조의20에 따른 발전정

<신 설>

<신 설>

보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5. 제18조의19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업무의 대행(차액정산금의 산정·통지·청구·지급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의29(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2조의19제3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8에 따른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30(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0 제2항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시장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시
장관리기관에 발전정보인증서
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
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기
간 내에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
약시장관리기관이 그 신청기간
내에 해당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급량을 확인한 때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발전정보인증서
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연 락 처	044-203-5362 044-203-5366